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 마련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14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10.

3. 회부연월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4월 기준 17만 3,877명의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생략)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u>행정직원</u> 등 직원을 둔다.	② ----- ----- <u>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9조¹⁾는 학교에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²⁾에 따른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부 실태조사('24. 4. 1.)에 따르면, 각급학교와 행정기관에는 조리원(50,169명, 28.9%), 특수운영직(19,816명, 11.4%), 교무행정(19,721명, 11.3%) 등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17만 3,877명이 근무하고 있음. <참고 1: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현황>
- 일반적으로 공무직근로자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기간제,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자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자회사에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 포함), 그 외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등 기간제 근로
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³⁾

□ 이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
도 법률에서는 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
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에 포함함
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교원의 지위는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같은 법 제
14조제6항4)에 따라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법률로
「교육공무원법⁵⁾」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교육공무원

3)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2021. 8. 31.), 공무직위원회, p. 1 참고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가이
드라인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⑦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에게 적용할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반면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입법 사례는 없고, 교육공무직원의 경우는 교육 관련 법령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법규⁶⁾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복무·교육훈련·채용·전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

<참고 2: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예시>

[2024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 현황]

(단위: 명, 2024. 4. 1. 기준)

구분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계
서울	17,872	7,155	25,027
부산	7,812	2,347	10,159
대구	7,112	1,157	8,269
인천	8,600	2,586	11,186
광주	4,484	601	5,085
대전	4,300	935	5,235
울산	4,182	402	4,584
세종	2,200	272	2,472
경기	33,572	4,135	37,707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6)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공무직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 국립 부설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부 훈령(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규정함

강원	6,763	1,021	7,784
충북	5,676	252	5,928
충남	7,826	1,161	8,987
전북	6,410	1,062	7,472
전남	7,072	610	7,682
경북	7,891	1,992	9,883
경남	11,278	1,997	13,275
제주	2,130	389	2,519
소 계	145,180	28,074	173,254
국립학교	556	67	623
계	145,736	28,141	173,877

*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학교에서 공무원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법률로 공식화되고, 해당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직원은 직종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⁷⁾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에는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⁸⁾ 개정안과 같이 ‘교육공무직원’을 명시하더라도 채용·자격·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는 기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체계의 정합성 및 입법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2023상,991]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표준화와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 보호 관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역의 재정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범위와 업무, 근로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참고로,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2020년 3월 27일부터 3년간 공무직위원회⁹⁾를 운영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등을 논의한 바 있으나 입법 필요 여부, 방식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이견이 있어 법제화되지는 못하였음.
- 한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규직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 및 기타 비정규직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

< 판시사항 >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 9)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2020년 3월 27일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소속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무직 보상 및 처우개선과 인사관리(채용·휴가 등) 문제 개선을 목표로 3년간 활동**함

공무직위원회는 산하에 설치된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및 인사 실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하고, '임금의제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공무직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수당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함

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려는 취지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2203830호)」이 발의¹⁰⁾되어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임.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부문 전체 공무직 근로자의 법제화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19조제2항의 ‘행정직원 등 직원’에는 교원 외 지방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직원의 개념에 이미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될 수 있어 법 체계상 중복 우려가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공무직의 직종, 업무 범위 등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설정하고, 채용·인사·복무 등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공무직의 정의, 지위,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등이 부재하므로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시·도교육청은 현행법상 행정직원 등 직원은 신분상 분류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표현이고(경기), 행정직원은 예시 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학교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구)하다는 사유로 각각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급학교는 이견없음(28개교), 일부수정(1개교) 및 신중검토(5개교) 의견을 각각 제시함.¹¹⁾

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30호)이 2024년 9월 10일에 발의되어 2024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

11) 시·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는 이견없음(28개교), 일부수정(1개교) 및 신중검토(2개교) 의견을 각각 제시함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취지로 발의된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제2211409호)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

< 28개 각급학교(강원(14), 경남(12), 충남(2)) > : 이견없음

- 교육공무직원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급식, 돌봄, 안전관리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필수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조직 내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공동체 내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찬성함

< 1개 각급학교(충남(1)) > : 일부수정

- 학교 정상적인 운영 및 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시를 하여 현장에서 자주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5개 각급학교(강원(1), 전북(1), 충남(3)) > : 신중검토

- 교육공무직원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로, 법률에 명시할 경우 공무원과의 위계 의식 조장 및 기능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행 법령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고 시도별 정의도 상이함. 성급한 법률 명시는 법체계의 일관성과 인사제도 정합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교육의 본질적 기능(교원 중심)과 지원 기능 간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됨

□ 교육공무직원 현황 (※'24.4.1 교육부 실태조사 기준)

○ 총 인원: 173,877명, '23년 대비 3,616명(2.1%) 증가

※ ('20) 167,825명 → ('21) 168,825명 → ('22) 169,910명 → ('23) 170,261명 → ('24) 173,877명

○ 구성 현황

▪ 직종별: 조리원, 특수운영직, 교무행정 순으로 비율이 높음

※ 조리원(50,169명, 28.9%), 특수운영직(19,816명, 11.4%), 교무행정(19,721명, 11.3%)

▪ 기관별: 공립학교, 사립학교, 행정기관, 국립학교 순으로 비율이 높음

※ 공립(145,821, 83.9%), 사립(20,255명, 11.6%), 행정기관(7,178명, 4.1%), 국립(623명, 0.4%)

▪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비율이 높음

※ 초등(82,928명, 49.7%), 중학교(33,495명, 20.1%), 고등(33,179명, 19.9%), 유치원(10,346명, 6.2%)

▪ 성별: 여성 비율이 87.8%로 다수

※ 여성(152,749명, 87.8%), 남성(21,128명, 12.2%)

▪ 연령별: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비율이 높음

※ 50대(81,060명, 46.6%), 40대(49,254명, 28.3%), 60대(19,591명, 11.3%), 30대(14,685명, 8.4%)

○ 계약 현황

▪ 무기계약 전환: 전환대상자의 100% 무기계약 전환(145,736명명)

※ 기간제 근로자(28,141명):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23,159명, 전환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전환자 4,982명

▪ 근무형태: 방학중비근무 90,503명(52.1%), 상시근무 83,374명(47.9%)

▪ 근무연수: 평균 근무연수 7.9년, 사무행정 > 조리사 > 교무행정 순

※ 사무행정 13.1년, 조리사 12.9년, 교무행정 12.2년 중

□ 직종별 현황

순	직 종 명	인원 수(명)	비율(%)
1	교무행정	19,721	11.3%
2	사서	3,897	2.2%
3	사무행정	13,175	7.6%
4	시설관리	7,720	4.4%
5	늘봄학교지원	18,278	10.5%
6	통학차량지원	2,627	1.5%
7	특수교육실무	11,407	6.6%
8	취업지원관	332	0.2%
9	영양사	4,385	2.5%
10	조리사	9,091	5.2%
11	조리원	50,169	28.9%
12	배식지원	2,993	1.7%
13	교육복지사	1,895	1.1%
14	전문상담사	3,180	1.8%
15	특수운영직	19,816	11.4%
16	기타	5,191	3.0%
합 계		173,877	

참고 2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예시

※ 교육공무직 규모가 큰 경기·서울·경남교육청을 기준으로 작성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0. 14.] [경기도조례 제8222호, 2024.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and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과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2. "각급 교육기관"이란 교육감 소속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 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8.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9.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10.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04.07.>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7>

제6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로서의 소양 함양, 전문성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04.07.>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노동을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노동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 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 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9조(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 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4.07.>

③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7>

제10조의2(고용 환경 개선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장기근속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제11조(교류 또는 전보)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표 2] 정원의 총수(제10조 관련)

연번	직종명	정 원			
		공립 각급학교 (유,초,중,고,특 수,각종)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포함)	도교육청 (북부청 포함)	총 계
1	특수교육지도사	1,254	0	0	1,254
2	특수교육종일반강사	90	0	0	90
3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강사	9	0	0	9
4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강사	11	0	0	11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	0	89	1	90
6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실무사	0	25	0	25
7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450	0	0	1,450
8	영상기사	0	0	5	5
9	교육복지조정자	0	18	0	18
10	교육복지사	138	0	0	138
11	영양사	785	0	0	785
12	조리사	2,325	2	1	2,328
13	조리실무사	12,428	15	3	12,446
14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432	0	0	432
15	Wee센터 사회복지사	3	21	0	24
16	Wee센터 임상심리사	1	20	0	21
17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0	25	17	42
18	행정실무사	7,179	0	0	7,179
19	학부모상담사	0	0	2	2
20	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0	39	0	39
21	초등보육전담사	3,025	0	0	3,025
22	늘봄행정실무사	437	0	0	437
23	사서	1,480	0	0	1,480
합 계		31,047	254	29	31,33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표]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총수

연번	직 종 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행정기관	합계
1	교육실무사[통합]	454	2,260	827	329	23	8	11	3,912
2	교육실무사[교무]								
3	교육실무사[과학실험]								
4	교육실무사[전산]								
5	교무행정지원사								
6	유치원교육실무사								
7	교육실무사[실습]				92		21		113
8	교육실무사[돌봄]		565			11			576
9	유치원에듀케어강사	880							880
10	유아교육사							12	12
11	구 학부모회직원			442	236				678
12	사무행정실무사(단위학교)								
	사무행정실무사(행정기관)							4	4
13	사서		483	274					757
14	학교도서관실무사		37	2					39
15	돌봄전담사		1,843						1,843
16	특수교육실무사	171	497	231	74	189			1,162
17	특수에듀케어강사	70				85			155
18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40	40
19	영양사	21	54	163	73			3	314
20	조리사	46	565	275	42	11		6	945
21	조리실무사	46	2,492	1,120	195	28		17	3,898
22	단위학교		159	109	35		5		308
	Wee/117센터							40	40
	본청·직속기관							31	31
23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1	179	108					298
24	교육복지조정자							23	23
25	수련지도사							73	73
26	취업지원관							2	2
27	당직전담원		25	22	26			38	111
28	미화원	16	192	75	52	6	2	221	564
29	시설관리원		22	24	10			54	110
30	콜센터상담원							35	35
합 계		1,715	9,373	3,672	1,164	353	36	610	16,923

※ 직종별·기관별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 운용하며, 신설교(유) 및 신설학급은 선 배치 후 정원 조정

※ 정원책정과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연번 1~5개 직종의 정원수에 구학부모회직원(호봉제직원) 포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교육공무직원 직종의 구분 및 정원의 총수(제3조 관련)

직종명		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 계			11,212	249	378	10,585
1	교무행정원		1,109	-	-	1,109
2	과학실험원		135	3	18	114
3	전산실무원		8	6	-	2
4	전담사서		193	4	6	183
5	도서관운영보조인력		11	10	1	-
6	사무행정원		367	20	38	309
7	학부모지원전문가		15	2	13	-
8	구.학부모회직원		115	-	-	115
9	매점관리원		15	-	-	15
10	당직전담사		672	22	45	605
11	시설관리직		0	-	-	-
12	청소원		964	58	60	846
13	돌봄전담사		978	-	16	962
14	유치원방과후전담사		250	-	-	250
15	특수통학차량운전원		7	-	-	7
16	통학차량보호탑승자		235	-	-	235
17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30	-	-	30
18	특수교육실무원		638	-	-	638
19	특수학교(급)종일반강사		32	-	-	32
20	특수행정실무원		189	13	37	139
21	치료사		111	-	40	71
22	취업지원관		25	3	-	22
23	스페셜코디네이터		12	-	8	4
24	영양사		251	9	-	242
25	조리사		567	9	-	558
26	조리실무사		3,335	26	20	3,289
27	교육복지사		123	1	24	98
28	전문상담사		272	13	20	239
29	임상심리사		20	2	18	-
30	사회복지사		1	-	1	-
31	교육지도사		15	15	-	-
32	기숙사생활지도원		91	4	-	87
33	공기질측정기사		7	-	7	-
34	방송전문가		2	2	-	-
35	수련지도사		6	6	-	-
36	수상안전요원		4	-	4	-
37	안내원		23	21	2	-
38	방과후학교실무원		384	-	-	384